

<공개용>



2026년 보조사업(민간위탁금) 특정감사 결과 보고

2026. 5.



울산광역시 동구
Donggu Ulsan Metropolitan City
(기 획 예 산 실)

2026년 보조사업(민간위탁금) 특정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 감사기간: 2026. 4. 13. ~ 4. 24.(12일간)
- ☐ 감 사 단: 감사팀장 등 4명
- ☐ 감사대상: 건설·도시·기타분야 보조사업
- ☐ 감사범위: '21. 1월 ~ '25. 12월(구비 1억원 이상 민간위탁보조사업)
- ☐ 수감부서: ◇◇과, ▷▷▷▷▷과
- ☐ 지적건수: 15항목 53건(시정 13, 주의 40)
- ☐ 감사 중점사항
 - 보조사업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내용변경 여부
 - 보조사업의 계약 및 회계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의 적정성 여부
 - 예산운용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 및 낭비 요소 등
 - 담당부서의 지도·감독 적정성
 - 민간위탁 사무 운영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등

II 감사결과

☐ 총괄현황

지적 항목	행정상 처분요구(건)			세부내역						
				재정상 (건/천원)				신분상 (건/명)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징계	훈계
15	53	13	40	13 (814천원)	11 (798천원)	- (-천원)	2 (16천원)	-	-	-

□ 부서별 지적사항

부서명	지적사항	건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천원)	비고
2개 부서	15항목 53건 (시정 13, 주의 40)	53		814	
◇◇과 (9개 항목)	①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2	시정	50	-
	② 기념품·홍보물 제작 배부대장 누락	2	주의	-	-
	③ 대가 지급 기일 미준수	5	주의	-	-
	④ 물품제작 시 관외업체와 계약 후 보조금 집행	4	주의	-	-
	⑤ 민간위탁사업 관리 감독 소홀	2	주의	-	-
	⑥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소홀	4	주의	-	-
	⑦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7	시정	732	-
		2	주의	-	-
	⑧ 위탁사업 용도 외 보조금 집행	2	주의	-	-
	⑨ 지출 관련 증비 서류 미비	2	주의	-	-
▷▷▷▷▷과 (6개 항목)	⑩ 관외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2	시정	16	-
		2	주의	-	-
	⑪ 대금지급 기일 미준수	4	주의	-	-
	⑫ 사무편람 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1	주의	-	-
	⑬ 수당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2	시정	16	-
	⑭ 예산 전용 승인 검토 부적정	7	주의	-	-
	⑮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3	주의	-	-

□ 총 평

- 「울산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및 「2026년 자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2026. 4. 13. ~ 4. 24. <12일간> 2개 부서 6개 보조사업 대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구비 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민간위탁금)의 집행 실태 및 사업 추진 현황을 감사한 결과,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음.
-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과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방어동, 서부동, 남목)사업을 ▷▷▷▷과는 동구●●●●●●센터 운영 예산을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집행하고, 사업은 수탁업체 또는 기관과 협약(위탁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및 ●●●●●●센터 운영 (▷▷▷▷과)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선정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후 위탁운영 중임.
- 하지만 일부 보조사업은 사무편람을 미작성하거나 편람을 제출승인을 받지 않는 등 세부지침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기본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보조사업 월별 업무평가서 및 계획서 제출 지연 등 정기적 관리감독의 소홀, 민간위탁 관련 내부 통제의 미흡 등으로 사업 추진 사항이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등 민간위탁 사업 관리에 일부 부실한 점이 발견되었음.

-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는 예산 변경 및 전용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관할 구청장의 승인 절차를 누락하였고, 일부 수탁자는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 및 회계검토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사실이 있음.
- 수탁자의 회계처리 및 계약관리 측면에서는 출장여비 지급 집행 부적절, 대금지급 기일 미준수, 지출 관련 증빙서류 미비 등 회계 규정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됨.
- 특히 업무추진비의 경우, 민간위탁사업 운영 성격에 맞지 않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 등이 기관 운영과 관련된 공식업무 추진 성격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회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 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협의, 현안 검토 등이 아닌 개소식 준비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 격려를 위해 내부 직원에 대한 식비, 다과비 등 복리후생성 경비로 반복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바 있음.
- 보조금(민간위탁금) 집행 전반에 있어 법령 및 규정 미준수, 회계처리 부적절 등 일부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관리·감독 부서의 지도 점검 부족과 수탁기관의 관련 법령 및 지침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소관부서: ◇◇과

순번	내 용	비고
1	1.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근거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2항에는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와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지적사항】 남목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사업자인 ■■■■■■■■■■은 ■■■ 등 2명이 남목 도시재생대학: 학습여행 사전답사를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으로 간 출장(출장왕복거리가 12km가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으로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됨)을 근무지와 출장으로 보고 관련규정을 미준수하여 관내출장 여비가 아닌 관외출장여비로 지급한 바 있음.	시정 (환수)
2	2. 기념품·홍보물 제작 배부대장 누락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방문의 선물 등은 사업 목적과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보고서·간행물 등 인쇄물은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동구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사업자인 ■■■■■■■■■■은 기념품 제작시 기념품 제작의 목적,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않고, 2만원 상당의 우산을 제작한 바 있음. 또한, 소식지 창간호를 제작함에도 당초 2회에 걸쳐 제작예정이었으나, 500부를 1회성으로 배부계획을 수립하지않고 제작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주의

순번	내 용	비고
3	3. 대가 지급 기일 미준수 【근거법령】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도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대가는 계약상 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지적사항】 남목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사업자인 ■■■■■■■■■■은 유관기관 설명회 현수막 제작 등 총 5건에 대해 「지방계약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청구를 받은 날(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부터 5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하였음.	주의
4	4. 물품제작 시 관외업체와 계약 후 보조금 집행 【근거법령】 우리구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법인 등)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 【지적사항】 동구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사업자인 ■■■■■■■■■■은 2024년 동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작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내 업체에서 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구 등의 관외업체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 동구 시책에 역행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주의

순번	내 용	비고
5	5. 민간위탁사업 관리 감독 소홀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무편람)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절차,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남목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제4항에 수탁자는 월별 업무평가서 및 계획표를 매월 25일에 제출을 해야 함. 【지적사항】 ◇◇과에서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사무편람을 제출 받아 승인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월별 업무 평가표 및 계획표를 수차례 지연제출하였음에도 시정요구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 사업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주의
6	6.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소홀 【근거법령】 「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 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정산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적사항】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맑은도시로부터 2021년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3분기 위탁운영비 정산서를 2개월(2021. 11. 30.)이 지난 2022. 1. 7에 제출을 받았으며, 2021년 ~ 2023년 간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매분기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받은 정산서류에 대해 분기별 정산 검사를 하지 않고, 연도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동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1분기에 정산 검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주의

순번	내 용	비고
7	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관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부서장 등 공무원 조직 운영비 성격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둘 수 없는 항목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법」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자의 기본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지급하게 되어 있음. 민간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비, 간담회 운영비는 ○○○프로그램 기획 회의, ○○○사업 운영회의 등으로 추진하되 회의 개최일시, 회의목적,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증빙되어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게 집행하고,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함. 【지적사항】 동구 ◇◇과는 2024. 3분기 동구 도시■■■■■■■■ 위탁 운영비 교부신청서의 기관업무추진비를 검토하지않고 승인한 바 있으며, 동구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사업자인 ■■■■■■■■■■은 개소식 준비를 하면서 사업추진비를 내부 직원에 대한 식비, 다과비 등으로 복리후생성 경비로 반복적으로 지출한 바 있음. 또한, 토·일 주말에 업무추진비 집행, 특정시기(연말)에 집중집행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음. 또한 ■■■■■■■■■■은 남목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행사 실제 참석인원과 결의서 상에 참석인원이 불일치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소홀히 하였음.	시정 (환수)

순번	내 용	비고
8	8. 위탁사업 보조금 용도 외 사업비 집행 【근거법령】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지적사항】 수탁자 ■■■■■■는 남목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강사비)로 센터 운영과 관련 없는 ‘제2회 방어진회축제’ 행사 안내를 위해 인력 000 등 4명에게 400천원을 인력지원비로 지급하고, 동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기타인건비)로 ‘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축제’ 행사지원 인력비로 000 등 3명에게 500천원을 지급하였음. 또한 단순 축제행사 안내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급근거로 하여 부적절하게 지급하였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는 무관한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는 마을축제 운영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지방보조금용도 외 사용하였음.	주의
9	9. 지출 관련 증빙서류 미비 【근거법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지적사항】 수탁사업자 ■■■■■■■■■■은 현장지원센터 소규모 수선 후 확인서(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확인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바 있음.	주의

소관부서: >>>>과

순번	내 용	비고
1	1. 관외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근거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에 의하면, 국내여행자 및 해외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지급기준(붙임2)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됨. 【지적사항】 울산동구○○○○○○센터에서는 출장비 지급 시, 사후정산이 아닌 사전에 여비를 지급하거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 지급시,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교육복지공동체 소통 워크숍 참석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으로 간 출장(출장왕복거리가 12km가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으로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됨)을 근무지외 출장으로 보고 관련규정을 미준수하여 관내출장 여비가 아닌 관외출장여비로 지급한 바 있음.	시정 (환수)

순번	내 용	비고
2	2. 대금지급 기일 미준수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사항】 ○○○○○○센터에서는 복사기 임대료 납부 등 4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내로 지급하지 않고 기한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의
3	3. 사무편람 작성 및 제출기한 미준수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를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절차·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적사항】 울산동구○○○○○○센터는 사무위탁 계약 후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

순번	내 용	비고
4	4. 수당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근거법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및 같은 법 제 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22%로 원천징수금액(지급 총액의 8.8%)이 산정됨. 【지적사항】 보조사업자 울산동구●●●●●센터는 교육 강사 인건비에 대하여 기타소득 세율(지급총액의 8.8%)을 적용하여 공제하지 않고, 사업소득 세율(지급총액의 3.3%)을 적용하여 ●●,●●●●원을 과소 공제 한 사실이 있음.	시정
5	5. 예산 변경 및 전용 승인 검토 부적정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관 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동일 관 내 항 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동일 항 내 목 간 전용은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 【지적사항】 ▷▷▷과에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타비목으로, 업무추진비 또한 타비목에서 전용하였으며, 관, 항, 목 간 전용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

순번	내 용	비고
6	6.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근거법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취득가액50만원 이상) 취득 후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울산광역시 동구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 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적사항】 울산동구○○○○○○센터는 중요재산 취득 및 변동현황에 대하여 구청장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사무실 가구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주의